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5년 06월 13일

화성시
정남면장인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이 *우	이 *우 1953-06-24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함박안길13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6-05
이 *우	이 *희 1985-05-16	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함박안길13번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5-06-05